

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상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의의원 : 김상수, 박경원, 김영실,
이수련, 이진환, 김지훈(국),
이상기, 김지훈(민)

1. 제안이유

최근 전기자전거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·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‘자전거의 날’을 규정함으로써, 시민 참여 확대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8호)
- 나.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·운영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제1항~2항)
- 다.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명확화(안 제11조제1항~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관련 법령 : 덧붙임

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전기자전거”란 자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11조(자전거이용의 날 지정·운영) <u>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<u>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의2에 따른 <u>전기자전거를 말한다.</u></p> <p><u>제6조의2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 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1조(자전거이용의 날 지정·운영) ① <u>시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: 「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

※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예상비용

- 현재 관련사업의 수요가 부족하여,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은 없으나 관련업체 가격조사 결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1기(전기자전거 10대 충전) 설치 시 약 5,000천원 소요예정으로 조사됨.

4. 작성자

-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

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의2. “전기자전거”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페달(손페달을 포함한다)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

나.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

다.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

제11조의4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의3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